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RDP MOU)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최기일**

Gi-Il Choi**

ABSTRACT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emerging security threats around the world, there is a remarkable trend of domestic priority in international issues linked to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 has advocated so-called "American First," and has implemented foreign and economic policies that put U.S. interests first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President Biden has also advocated "Buy America."

In particular, the U.S. government is opening up the defense procurement market by envisioning a reorgan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with 28 allies through the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RDP MOU) system. On May 21,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shar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signing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RDP MOU) to continue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al The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U.S.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RDP MOU), focusing on the Biden administration's promotion of Buy America among the current U.S. Preferred Purchase Act(BAA).

초 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안보 위협이 대두되면서 각국의 이익과 결부된 국제적 현안에 있어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주창한 가운데 국제 질서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고,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산 우선구매(Buy America)를 표방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제도를 통해 우방국 28개 협정 체결국들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구상하면서 국방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에는 한미 양국 정상에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 한미동맹 지속을 위해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한 계기가 됐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중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추진동향을 중심으로 향후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추진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Key Words :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OU(상호국방조달협정), Buy America Act(미국산우선구매법), Emerging Security(신종 안보), The Republic of Korea & U.S. Alliance(한미동맹), Defense Industry(방위산업)

* 본 논문은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최신외국법제정보(Issue Brief on Foreign Laws) 외국법제동향 조사 및 분석 의뢰에 따라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군사학전공 교수(단독저자 E-mail: choigii181@sangji.ac.kr)

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형 안보¹⁾ 위협이 대두되면서 각국의 이익과 결부된 국제적인 현안에 있어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해외 서구권에서는 1990년대 냉전(Cold War)이 종식된 이후부터 평화적인 상태가 지속되던 가운데, 탈냉전으로 긴장 완화와 군비 축소로 이어진 세계 평화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실정이다.

특히, 2019년 11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코로나(COVID) 바이러스로 촉발된 대규모 감염병 사태인 팬데믹(Pandemic)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은 저마다 신형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와 함께 자국 우선주의 성향 색채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주창하면서 국제질서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던 반면에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우선구매(Buy America)’를 표방한 것이 대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저하게 자국만을 우선하면서 해외에 이전한 기업과 공장을 다시금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제도를 활발하게 추진한 가운데, “미국에서 제조하라(Make in America)” 정책을 추진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동맹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되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관련 행정명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산우선구매법(BAA, Buy American Act)」²⁾을 통해서 이를 보다 유연하게 강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림 1〉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신형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안보와 국방산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다.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은 미국 정부가 우방국 28개 협정 체결국들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공동개발 및 생산 등에 있어 상호 국방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제도이다. 한미 양국 정상은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 한미동맹 지속을 위해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공감한 계기가 됐던 것으로 금번 한미정상회담의 결실과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현행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중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추진동향을 통해서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으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제도적 의의와 특징 및 시사점, 함의 등을 분석하도록 한다.

특히, 미국산우선구매법(BAA) 관련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국내 국방조달 및 방위산업 관련 관점에서 한미 간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 1) 국제적인 원자재 및 식량 공급망 위기, 기후 변화, 자연재해, 대규모 난민, 팬데믹(Pandemic) 등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들로 기존의 정치 및 군사적 안보의 틀에서 벗어난 개념임. 국제정치학에서는 신형 안보(Emerging Security)를 비전통 안보, 신안보, 포괄 안보라고도 일컬음.

주 2)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II. 이론적 고찰

미국산우선구매법(BAA)과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과 접근 이전에 국방조달과 방위산업에 대한 주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국방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함에 있어서 국방조달과 방위산업 관련 개념적 이해와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2.1. 국방조달의 개념 정의

먼저, ‘국방조달(Defense Procurement)’이란 학술적인 의미로는 무기체계의 설계, 개발, 시험, 계약, 생산, 배치, 군수지원, 개량, 폐기처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사용하고 있다.³⁾

국방조달 관련 제도 및 업무절차는 미국에서 유래되었으며, 미국에서의 국방조달은 “군사적 임무를 지원 및 사용할 예정인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군수품, 무기와 그 이외 체계들을 개념화, 착수, 설계, 개발, 시험, 계약, 제작, 배치, 군수지원, 개량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광의의 조달은 소요, 예산, 조달 프로세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협의의 조달은 구매의 방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조달과정에 소요와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⁴⁾

종합적으로 국방조달의 개념은 앞서 내용들과 방위사업청이 발간한 용어사전⁵⁾을 바탕으로 정의하자면, ‘국방조달’이란 무기 및 장비 등 군수품의 획득과 조달을 위해서 수행하는 업무라 표현할 수 있겠다.

2.2. 방위산업의 정의와 함의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안보와 직결이 되는 특수한 국방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뜻을 지닌다. 즉, 방위산업은 유사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함께 미래 평화

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안보재의 투자성격이 매우 짙다. 따라서 국가 방위산업 육성은 국가안보와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력의 원천이며, 귀중한 국가안보 자산이라 할 수 있겠다.⁶⁾

과거 방위산업은 군수산업 또는 국방산업으로 지칭했는데, 이는 국가방위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한국 국가 안보 보장과 영토 수호라는 국가적 전략의 목표 하에 군을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물자를 연구개발, 생산, 공급하는 일체의 산업 활동 주체라 할 수 있다.

방위산업에 있어서 협의의 개념으로 총포, 탄약, 미사일, 전차, 항공기, 전함, 잠수함 등과 같이 군의 직접적인 전투 수행과 관련된 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현대전의 양상인 국가 총력전 개념에서 보자면, 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을 광의의 방위산업 개념에서 포함할 수도 있다. 보편적으로 방위산업은 협의의 개념인 국방 무기체계와 관련되는 산업을 지칭한다.

방위산업은 국가 간 거래에서 사실상 불법거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 종류의 고객인 각국의 정부를 의미하겠으며, 세계 각국의 정부는 방산업계의 산업적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Dunne. J. P.(2009)⁷⁾이 지적했듯이 각국의 정부는 여전히 방산업계의 규모와 구조 및 시장 진입과 퇴출, 효율성과 기업의 소유관계, 수출과 기술발전 등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 기본적인 방위산업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국의 방산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의 수요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결정하는 총 소요량을 기본으로 획득 및 조달기관인 방위사업청⁸⁾에서 국내 또는 국외 구매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내 수요가 결정되며, 기업들의 해외 수출량을 포함하여 전체 수요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주3) 김중하, 『획득 전략 이론과 실제』, 북코리아, p.17, 김종열, “국방획득체계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62호, pp.123-156.

주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2008.

주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용어사전』, 2013.

주6) 최기일, “방산업계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12.

주7) Dunne. J. P., “Development in the global arms industry from the end of the cold war to the mid-2000s”, 2009.

주8) 정부조직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육/해/공군, 국방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서 수행되던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체계를 통합함으로써 국방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으로 2006년 1월 부로 개칭, 신설됨.

또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산업으로서 공공재(Public Goods)로 분류하며,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시장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공급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즉, 국가나 공기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다. Adam Smith도 “국방이야말로 궁극적 공공재이며, 국방의 관련분야는 사적영역에 남겨놓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⁹⁾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위산업 분야를 공공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이는 Matthews, Maharani(2009)가 지적했듯이 방위산업 자생력의 확보가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국방서비스의 성격으로 인해 세계적인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전반적인 탈규제와 자유경쟁의 흐름이 전 산업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조달 시장과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국가로부터 보호정책의 규제대상이 되어 왔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또는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 국제기구와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분야는 이러한 흐름에서 제한적 예외 영역으로 남겨졌다는 특징이 있다.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을 지향하는 산업이고, 이는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일반 민수산업에서는 다수 공급자들이 다수 수요자들을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동일한 제품을 다른 경쟁기업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일반 민수산업에서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위산업에서 제품의 가치는 적을 격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우위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가 가진 무기보다 우월한 첨단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이는 높은 고비용을 지불하던 과거 냉전시대에서는 중대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다. 냉전시대에 비용보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기술

적인 우월성을 갖는 무기개발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특히 수요자가 정부라는 점에서 가능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방위산업이 냉전체제 출현에 따른 강력한 국내 수요에 의해 성장했으나, 냉전체제 종식 이후 첨단 기술의 중요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방예산이 첨단 군수품 생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군수품 개발과 생산에 들어가는 높은 비용은 심각한 문제 사항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군수품 무역에서는 군수품이 수출국가의 안보를 역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국내 및 국제적으로도 강력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 국제적인 군수품 거래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며, 재래식 무기 및 민간기술의 군사적인 사용을 규제하는 바세나르체제 협정(Wassenaar Arrangement),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등이 있다.

국내 방위산업은 1970년대 초부터 자주적인 전력증강이 요구되면서 정부 주도 하에서 육성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중화학공업 건설과 병행하여 방위산업을 건설하는 전략을 채택하면서 방위산업 생산활동을 민수업체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오늘날 한국 방위산업은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6위로 평가되어 명품 K-방위산업의 위상과 저력을 인정받고 있다.

방위산업은 쌍방독과점적 특성과 규제산업적인 특성 이외에 대규모 투자와 고정비용 비중이 높고,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국방과 관련 연구개발에서는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자체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은 경향 등의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III. 미국산우선구매법(BAA)과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주요 내용 분석

3.1. 미국산우선구매법(BAA) 관련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미국산우선구매법(BAA)은 1993년 3월 3일에 제정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주9) Matthews, R and Maharani, C, "The defense iron triangle revisited", 2009.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1982년 제정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통해 연방 재정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강재 및 제조품 사용 의무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국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부터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승인한 7,89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법(Recovery Act)」¹⁰⁾을 시행하는 법안에서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표 1〉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¹¹⁾

서명 날짜	행정명령 No.	행정명령	비고
2017.04.18.	13788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폐기
2017.04.29.	13796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
2017.07.21.	13806	Assessing/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and Supply Chain Resiliency of the U.S.	-
2019.01.31	13858	Strengthening Buy-American preferences for infrastructure projects	폐기
2019.05.15.	13873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
2019.07.15.	13881	Maximizing use of American-made goods, products, and materials	개정
2020.04.28.	13917	Delegating Authority Under the Defense Production Act With Respect to Food Supply Chain Resources During the National Emergency Caused by the Outbreak of COVID-19	-
2020.05.07.	13921	Promot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

주 10)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제1605조에 따르면, ‘철강 및 모든 공산품이 미국산이 아닐 경우 공공건물의 건설, 개조, 유지 보수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당시 주요 선진국들은 해당 조항이 WTO 정부조달협정상 의무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불거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관세가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우선하고 있음.

주 11)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총 220개), 바이든 행정부(총 37개)에서 시행된 행정명령 중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관련 행정명령만을 발췌함(출처 : 대외경제연구원, 세계경제포커스, 2021).

서명 날짜	행정명령 No.	행정명령	비고
growth			
2020.08.06.	13944	Ensuring essential medicines, medical countermeasures, and critical inputs and made in the U.S.	-
2020.07.24.	13947	Lowering Drug Prices by Putting America First	-
2020.09.30.	13953	Addressing the Threat to the Domestic Supply Chain From Reliance on Critical Minerals From Foreign Adversaries and Supporting the Domestic Mining and Processing Industries	-
2021.01.14	13975	Encouraging Buy American Policies for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폐기
2021.01.25.	14005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

2021년 1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강화하는 「Made in America(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발표한 연방정부 조달을 통한 미국 제조업의 재건, 국내 공급망 개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의 후속 조치로서 지금까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관련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이행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를 포함하여 총 3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약 12개 이상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관련 행정명령이 시행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를 통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강화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를 비롯해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이행체계 개편, 예외 적용 관리 엄격화, 조달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①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현행 55%) ② 자국산 물품 가격 우대 상향 조정(현행 20 ~ 30%) ③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을 ‘가치’ 중심으로 변경(현행 ‘비용’ 중심)
- 예외 적용 관리 강화 ① 예외품목 리스트의 정기적 검토 ② 예외 적용 절차의 중앙집중화 ③ 상용 물품 및 정보기술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④ 해외 조달 물품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 절차 도입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이행체계 엄격화 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담기관(Made in America office) 신설 ②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체계 마련
 - ※ 그 외 중소기업 우대조치 강화, 미국 내 화물 운송 시 자국 선박 이용 의무화 포함

〈표 2〉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의 주요 내용¹²⁾

구분	이행조치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
	자국산 물품 가격우대 상향 조정
	자국산 물품 검증방식 변경
	해외조달 물품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제도 도입
예외적용의 엄격화	자국 공급업체 스카우트(Supplier Scouting)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예외품목 리스트 정기적 검토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예외 적용 절차의 중앙집중화
이행체계의 강화	상용 물품 및 정보기술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 전담기관 신설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이행체계의 투명성 제고
기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이행상황 보고 의무화
	이전 행정명령 폐기 및 개정 Jones Act에 대한 지지 확인

주 12) 행정명령 각 절의 내용에 따라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 예외 적용의 엄격화, 이행체계 강화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함.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5)의 주요 내용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의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시행조치들이 포함되었지만, 연방조달 부문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관련 내용만을 포함했다.¹³⁾

더욱이 본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달 분야에서 공약한 여러 정책의제 중에서 일부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향후 의약품, 에너지, 자동차, 정보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단행한 행정명령 조치의 일차적 목표는 연방 정부 조달에 있어 해외조달의 비중을 제한하면서 자국 내 조달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연방조달을 통해 제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9년 기준 미국의 연방조달에서 해외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점에 대한 불만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한 상대국과의 상호 개방 수준 및 진출한 실적이 호혜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저변에 존재한다.

미국의 주요 기간산업 및 필수 부품 분야 등에서 자국산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국 내 양질의 일자리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연방조달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조는 향후 다른 분야(첨단 정보기술, 에너지, 원자재, 통신 인프라 분야 등)로도 확장되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에서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어 향후 연방조달 시장의 진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자국산 물품에 대한 가격우대 강화, 해외조달 예외 적용 축소, 자국산 물품 검증(Component Test) 방식 변경, 미국 내 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 강화 등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높은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겠다.

주 13)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의 효력은 향후 본 행정명령의 폐지를 지시하는 새로운 법률이나 행정명령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미국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님.

향후 행정명령의 이행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변화된 미국 조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변화하고, 미국이 조달시장 개방 수준을 축소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및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3.2.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관련 미국 정부와 협정 체결국 주요 동향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정상 간 경제안보와 국방 산업에 대한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은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간 국방조달 시장과 방위산업 분야 개방을 목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결하는 협의문서이다.

〈표 3〉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주요 항목¹⁴⁾

구분	주요 내용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화(Rationalization)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표준화(Standardization)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조달을 위한 각 국의 책임 있는 출처에 의한 공정한 경쟁 허용 · 상대국 업체로부터 국방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시장 접근 장벽 제거 · 조달 관련 법률, 규정, 정책, 행정 절차 및 국제 의무에 대한 정보 교환 · 상대국 업체가 제안서 제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제공 · 정보 보호, 상충되는 약속 충돌 방지, 국방조달의 가치에 대한 통계자료 교환
적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 방산물자를 포함한 물자 · 국방용역을 포함한 관련 지원사항
미적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 건설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물자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은 국방조달 품목의 상호 교역에서 장애가 되는 규제와 장벽 등을 제거하면서 국방조달 시장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국 협정 체결국 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방산물자 생산, 조달, 군수 지원 등에 있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미국 「국방획득규정(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 225.872-1)」에서는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국은 유자격국가로서 규정하여 미국산우선구매법(BAA) 및 국제수지 개선 프로그램(BoPP, Balance of Payment Program)을 면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미국 국방부(DOD)가 규정하고 있다.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국제관계에 있어 비준(Ratification) 등과 같은 조약 체결처럼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쉽게 채택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련한 세부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양해각서(MOU)는 국제적인 약속은 기록하지만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형식과 단어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조약(Treaty)은 국제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국가들 간의 문서로 체결된 국제 협약을 의미하며,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의정서(Protocol) 등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1963년 캐나다와 상호국방조달협정(RDP)을 최초로 체결한 이후 2021년 리투아니아와 체결하여 현재(2022년 6월 기준)까지 미국 국방획득규정(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DFARS 225.872-1)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식 체결 협정국은 28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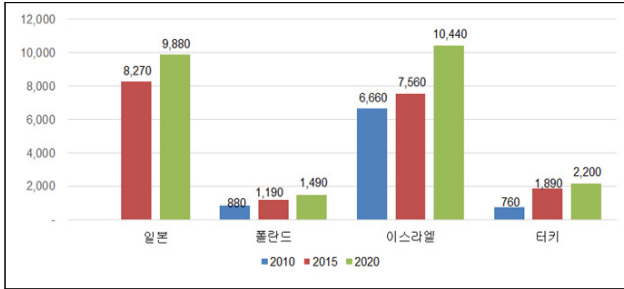
〈표 4〉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국가 현황¹⁵⁾

국가명	최초 체결	국가명	최초 체결
캐나다	1963.11.	스웨덴	1987.06.
스위스	1975.07.	이스라엘	1987.12.
영국	1975.09.	이집트	1988.03.
노르웨이	1978.05.	오스트리아	1991.09.
프랑스	1978.05.	핀란드	1991.10.
네덜란드	1978.08.	호주	1995.04.
이탈리아	1978.09.	룩셈부르크	2010.10.
독일	1978.10.	폴란드	2011.08.
포르투갈	1979.03.	체코	2012.04.
벨기에	1979.12.	슬로베니아	2016.04.
덴마크	1980.01.	일본	2016.06.
터키	1980.03.	에스토니아	2016.09.
스페인	1982.07.	라트비아	2017.04.
그리스	1986.09.	리투아니아	2021.12.

주 14) 신동협, “한미 상호조달 체결에 대한 방산 수출 경쟁력 분석 연구”, 한국 국방기술학회지 제2권 제3호, p.5.

주 15) DoD, International Contracting, RDP and Acquisition Policy, MOU, 2022.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을 체결한 28개 협정국가 중 대미 교역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대미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 수출실적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수출 품목의 규모뿐만 아니라 품목수도 증가했다.



〈그림 2〉 주요 체결국 대미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 실적 현황

출처: KIET

일본의 경우에는 무기수출 3원칙으로 인한 수출금지 정책의 영향으로 대미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 수출은 1990년대에 미미하게 발생하던 수준이었으나, 2015년 82.7억불 규모에서 2016년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 이후에는 98.8억불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기술력이 우수한 국가와 공동개발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일본과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전략적으로 증가시킨 배경이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의 대미 국방분야 관련 수출은 21건의 무기수출 사례가 있다.

폴란드는 2011년 8월에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을 체결한 이후 2010년 8.8억불 수준에서 2015년 11.9억불, 2020년 14.9억불로 전반적인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대미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으로 1987년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을 체결하여 2010년 66.6억불, 2010년 75.6억불, 2020년 104.4억불로 2010년 대비 56.8%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터키는 대체로 이른 시기인 1980년 3월에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을 체결한 반면에 체결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대미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수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에 대미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 7.6억불, 2015년 18.9억불, 2020년 22억불을 기록하면서

대미 수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호주¹⁶⁾는 주요 무기체계 분야에서 일정한 규모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방위산업 모기업의 호주 법인을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로 방위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었다. 1995년에 미국과의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을 체결한 시점 기준으로 대미 국방 및 방위산업 수출액이 1억불 내외로 발생하였으나, 대미 수입액 규모와 수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표 5〉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 관련 품목(HS 기준)

HS 코드	HS 국문명	분류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이들의 부분품	기동
890610	군함	함정
840710	피스톤 내연기관 항공기용 엔진	항공
840910	항공기 엔진용 부분품	항공
841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항공
8802	그 밖의 항공기, 우주선(인공위성 포함), 서보비틀, 우주선운반로켓	항공
880310	프로펠러,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항공
88032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항공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항공
880390	기타 부분품	항공
8804	낙하산(조종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과 로토슈트(Rotachute), 부분품 및 부속품	항공
8805	항공기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항공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화력
9301	군용무기, 리볼버(Revolver), 피스톨(Pistol), 제 9307호의 무기 제외	화력
930591	제9301호의 군용무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화력
9306	폭탄, 유탄, 어뢰, 지뢰, 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 및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포탄,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	화력
9307	검류,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	기타

한미 간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 교역액을 UN Comtrade 관련자료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2018년 기준 20.9억불 규모로 2014년 이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국과 한국의 연평균 교역액 증가율은 감소하였고, 한국의 대미 수입액도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에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0억불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주 16) 호주는 미국과 '방위협력조약(Defense Cooperation Treaty)'을 체결한 이후 미국 기업의 호주 법인을 통해 대미 방산제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임.

국제무역기구(WTO)에서 방위산업은 국가가 유일하게 정부조달협정(GPA) 체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자국의 방위산업을 배타적으로 보호 및 육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방위산업이 자국산업을 배타적으로 보호 및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지만,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라는 시장경쟁원리와 이윤배반적 조건이 적용되는 특수한 산업으로 분류된다.

전 세계 28개국이 미국의 우방국으로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을 체결하여 대미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 수출액 증대와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미국산우선구매법(BAA)과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조달할 경우에는 미국산 제품¹⁷⁾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제하는데, 구성품 전체 원가 중 미국산이 55% 이상 비중을 포함해야 한다. 현행 원가의 미국산 비중이 55%에서 2022년 10월 25일 시행 발효될 경우에는 60%, 2024년 65%, 2029년 7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¹⁸⁾

미국산 제품의 55% 이상 의무 비중을 위반할 경우에는 전체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서 50%의 가격 패널티(Penalty)를 부여하므로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 정부와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을 체결한 국가는 해당 제품 원가의 미국산 비중 의무조항이 면제되어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협정 체결이 선결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1963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8개 체결국가 이외에도 참여국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미국 국방조달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4,394억불(약 527조원) 규모로서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진출하여 인정받아야 국제 국방 및 방위산업 관련 시장에서도 우위의 입지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정부 간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이 시급한 이유인 것이다.¹⁹⁾

주 17) 미국산 제품의 정의는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25.003)에서 원자재의 경우에 미국에서 “채굴 또는 생산”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제조품의 경우에 해당 제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미국산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구성품 원가의 55%를 초과해야만 인정됨. 단, 해당 제품이 전체 또는 상당 부분 철과 강철로 구성된 제품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미국산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구성품 원가의 95%를 초과해야 함.

주 18) 김만기, “한미 RDP MOU 체결의 영향 예측 및 대응방안”, KAIST, 한국방위산업학회 정기총회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중 인용 및 발췌함.

IV.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추진방향 제언

현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할 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이행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미국 역대 행정부 중에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관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코로나(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10여 개 이상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조치로 이어지지 않아 조달시장 및 공급망 개선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과 비교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단행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은 구체적 이행조치(전담기관 신설, 상세 절차, 업무별 담당기관 지정, 보고 절차 신설, 특정 프로그램 등 언급)를 포함하고 있어 이행 수준이 높기 때문에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²⁰⁾

향후 관련 행정명령에 포함된 수준으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이 이행될 경우에는 상당수의 미국 기업과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공급체계를 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강화로 공급망을 개선해야만 하는 자국 기업들의 반대와 ‘바이 내셔널(Buy National)’ 정책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 조달시장의 위축으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즉, 자국산 물품 요건이 강화되면 해외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공급업체들도 기준 요건 등에 맞추기 위해 공급망을 변경

주 19) 현재 국내 방산기업들이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으로 약 50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인 미국 차세대 장갑차(OMFV) 도입 사업에 한화디펜스, 미국 오시코시 디펜스 컨소시엄이 참여 중(1차 입찰 / 5개 업체 통과)이고, 약 300억불 규모의 미국 해군 및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록히드마틴(LM) 컨소시엄이 참여할 계획임.

주 20)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은 정부조달 관련 공약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어, 당초 언급했던 국가 공급망 개선, 기후변화 관련 추가 이행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은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추진은 국제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내국민 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에 대한 위반소지가 있으나, 지금까지 주요국들은 분쟁해결이나 보복조치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자국 조달시장의 장벽을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메이드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연방조달 시장 진출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우회 진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자국산 물품 검증방식 변경, 해외조달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 예외 대상에서 상용품 제외, 연방조달 이외 분야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확대 적용이다.

그리고 자국산 물품 검증방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비용'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변경될 경우 조달담당관의 재량권이 커지고, 기준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건 충족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승하여 해외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외조달에 대한 비용 경쟁력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 조달 물품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상품(철강)의 경우에 미국 조달시장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²¹⁾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 공약에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원칙을 연방 조달뿐만 아니라 각 주와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공언했는데, 해외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주 단위 연방정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도 어려워질 수 있겠다.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적인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간접적인 진출 방식, 연방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조달 프로젝트의 발굴 등 새로운 진출 경로를 강구하는 것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주 21) 현재 상용품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예외품목으로 자국산 검증이 불필요하지만, 향후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 상용품(사무용 기기, 소형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 등)에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기회가 축소될 우려도 있음.

아울러, 미국 국방시장 진출에 있어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을 통해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는 미국산 제품 원가의 55% 이상 의무사항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받는다. 이는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국이 생산 및 제조한 제품 또는 서비스는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협정 체결 추진이 완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국방 및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와 기술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을 통해서 새로운 미국 국방조달 시장 진출의 기회뿐만 아니라 국제공동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국내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이해도 제고와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설명회와 소개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가 요구된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체결된 한미 FTA 이후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내 방산업계에 우려와 반대로 인해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추진이 무산된 배경이 있는데, 당시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회나 소개회 등이 전무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 추진 협상과정에 있어서 기민하면서도 전략적인 고려와 접근이 요구되는데, 대표적으로 국내 조선업종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미국 정부 측의 운항 선박에 대한 자국 내 건조를 강제한 '존스 액트(Jones Act)'²²⁾를 역이용하여 유리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이 시급한 반면에 국내 방산업계 생태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과 부작용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발표에서부터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

주 22)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 「Merchant Marine Act of 1920」의 제 27조를 지칭하며, 미국 내에서 선박수송 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 내 소재 또는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 및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임. 이는 타 국가의 선박에 대한 차별성으로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 안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이 됐는데,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 추진 간 협상용 카드로 활용 가능함.

들이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을 ‘국방상호조달협정’이라고 잘못 표기해오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즉, ‘상호국방조달협정’으로 정정해 올바르게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방위전략, 주변국과의 세력균형, 위협이나 능력요인과 같은 안보적 관점의 분석도 필요하겠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방국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의 핵심을 관련 협정 체결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므로 상호 국방기술 교환과 방산협력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V. 결론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강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방산매출액 대비 방산수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고, 대다수 방산업체들은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여 연구개발(R&D) 투자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 방산 선진국들의 주요 방위산업 성장 추진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산 생태계 체질 개선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정책 방향 등을 진단 및 점검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0년 기준 4,394억불(약 527조원) 규모인 미국 국방조달 시장은 방위산업을 포함해 무인이동체,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공동개발 및 생산, 공동마케팅 이외에도 미국 정부가 28개 협정 체결국들과 진행 중인 반도체, 5G, 배터리,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의 공급망 재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최우선 조건이 바로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한층 강화된 미국의 미국산우선구매법(BAA)은 자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 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미국 내 원산지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구성품의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50%의 가격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은 필수적이며,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와 밀접한 국방산업 관련 방산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한미 정부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한 데 대해 기대감이 크다.

5월 10일부로 정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06번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반영하여 국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확대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밝혔다. 또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을 국정과제 중 세부 이행방안에도 포함한 바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을 통해 고용 증대 및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에도 지대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방위산업 수출산업화 육성 추진정책 및 방위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이 시급한 선결과제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한미 간 국방조달 관련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방산업계의 타격과 악영향을 우려하는 막연한 반대 여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련 설명회, 소개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가 요구된다.

전 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와 신흥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국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는 시사점과 함의가 있겠다.

참고문헌

-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2008.
- 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용어사전』, 2013.
- 3) 김종하, 『획득 전략 이론과 실제』, 북코리아, 2016.
- 4)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 5) 김만기, “한미 RDP MOU 체결의 영향 예측 및 대응방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방위산업학회 정기총회 기념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022.
- 6) 장원준, “한미방산동맹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 전략”, 산업연구원(KIET), 한국방위산업학회 정기총회 기념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022.
- 7) 박혜리,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 시장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포커스 제4권 제16호, 2021.
- 8) 신동협, “한미 상호조달 체결에 대한 방산 수출 경쟁력 분석 연구”, 한국국방기술학회지 제2권 제3호, 2020.
- 9) 안보경영연구원(SMI), “한미 상호 국방조달협정의 방위산업 영향성 분석”, 방위사업청, 2020.
- 10) 최기일, “방산원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방위사업 원가관리 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11) Buy American Act, 1933.
- 12) Buy American Plan, 2020.
- 13)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1984.
- 14)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 15) UN Comtrad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 2022.
- 16) DoD, International Contracting, RDP and Acquisition Policy, MOU, 2022.
- 17)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1982.
- 18)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 1963.
- 19) Dunne. J. P, “Development in the global arms industry from the end of the cold war to the mid-2000s”, 2009.
- 20) Matthews, R and Maharani, C, “The defense iron triangle revisited”, 2009.